

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1 디지털 전파·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
- 전파감시, 전파교란 대응
-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·단속

2 전파·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 및 탐지업 등록·관리
-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·감독
- 무선국 전자파 관리
- TV방송 수신장애 조사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
-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
-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

3 편리한 전파·방송통신 행정서비스

- 무선국 허가·검사, 방송국 검사
- 공중케이블 점검
- 방송통신사업 등록·관리
-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
-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
- 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
-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
-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
-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·감독

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

-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- 어린이 전파교실

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emsit.go.kr

민원상담 080-700-0074 / 02-3400-2000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 - 서울북부사무소	(08249)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(11604)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	02-2680-1700 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 - 당진사무소	(35283)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(31754)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2-520-4100 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CISO 지정·신고제도 안내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CISO 지정·신고제도 알아보기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
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를 지정하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3
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?

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
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
제공을 매개하는 자

※ 전기통신사업자: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
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(종류:기간통신사업자,
부가통신사업자,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)

신고 대상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)

단순 제품홍보, 기관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
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밝히고 있는
개인정보처리자는 CISO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신고의무 제외대상-별도 안내 참조)

※ 영리행위 유무와는 상관없이 영리목적의 기업(상인 및 회사)은
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
제공자에 해당

신고의무 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?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
18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CISO의 의미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란?

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
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
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
총괄하는 최고책임자
- 기업 내 CISO를 임직원급으로 임명하여 운영함으로
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보
호 및 보안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와 함께 침해사고에
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※ 단, 겸직제한기업은 '이사'

CISO의 자격요건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의 자격요건

-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
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2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3년
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를
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 관련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
사람
- 5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심사원의 자격을
취득한 사람
- 6 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1년이상 근무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CISO신고의무 제외 대상 및 신고 방법

신고의무 제외 대상

- ①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
- ② 소기업
- ③ 중소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
의무대상자, 개인정보처리자,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

겸직 제한

아래 대상의 기업은
CISO의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직 금지

- 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
-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직전사업연도 말
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
※ 특별자격요건(겸직 제한 대상은 일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근
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함)

1. 정보보호 분야업무 경력이 4년 이상
2.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과 정보기술 업무경력을 합산한 기간이
5년(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 업무경력 필요)이상

※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신고 방법(문의 및 제출)

신고 및 접수관련

온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www.emsit.go.kr)

우편 및 팩스 지역별 전파관리소

제외 대상 자료 제출 및 제도 관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
(cybercq@korea.kr)

